



노동부  
Ministry of Labor

## 보도자료

▶ 산재보험과 김제락 과장  
김주택 사무관

TEL : 2110-7231(010-3301-1877)  
E-MAIL : wcmol.go.kr  
F A X : 507-3734

▶ 2009. 6. 29. 배포  
▶ 총 2쪽 (사진없음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노동부 뉴스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#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되고

#### 소규모 사업장도 보험료 할인받는다

- 덤프트럭, 굴삭기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 산재보험 적용
- 2011년부터 상시 근로자 20~29명 사업장(약 3만개)도 산재사고 없으면 최대 20%까지 보험료 할인
- 하역근로자 산재보험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추진

- 노동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」과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발표했다.
-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덤프트럭, 굴삭기, 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,
- 201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- 6월 30일 공포된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개정령에 따르면,
- 그동안 덤프트럭, 굴삭기,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 등이 속해 있는 건설기계사업은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 재해를 0.71%보다 4.6배나 높은 정도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.
- 그러나 개정령에서는 건설기계 자차기사를 산재보험 임의 적용 대상인 중·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하였다. 따라서 건설기계 자차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부득이하게 산업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, 그에 따른 요양 및 휴업보상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-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전국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.
-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말 현재, 전국에는 약 20만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한편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령에 따르면,
-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(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% 이하이면 보험료를 할인하고, 85%를 초과하면 할증)를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하였던 것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에도 적용,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.
- 다만 근로자 20~29명의 사업장은 미미한 산업재해에도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되므로 할증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·할증 한도를 20%로 제한하였다.

- 201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,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의 75% 이하인 사업장은 2011년부터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된다. (85%를 초과하면 할증)
- 이번 「보험료징수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근로자가 20~29명인 사업장 중 약 84%가 연간 약 86억여원의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참고로, 지난 6월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에서는 ‘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합의문’을 채택한 바 있다.
  -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하역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사용자를 지정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. 이에,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산재보험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.
  -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로부터 합의문이 이송되는 대로 공동 산재보험 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.
- 노동부 산재보험과 김제락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“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건설기계 자차기사들이 임의 가입 형태라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 면서 하역근로자의 원활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